

2025년 배방 호담실버케어스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 이용대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는 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가. 장기요양 1~2등급

- 나.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4. 위 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65세 이상의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2. 입소절차 : 시설의 입소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시설과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한다;
2.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제출한다.

가. 건강진단서 1부

- 나.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 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일 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입소 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다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 시설의 장에게 통보한다.

4. 제10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소는 시설과 입소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

3. 입소비용: 시설의 입소비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4.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 ① 입소정원:시설의 입소정원은 49인으로 한다.

② 일반실(4인실) 11실, 상급실(1,2인실 13실, 특별실(11실)

- ③ 모집방법: 노인장기요양보호홈페이지, 기관정보지,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자원 봉사자, 연계협력기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모집한다.

입소 시 구비서류) 시설 입소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이용신청서 1부
2. 장기요양인정 서류(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우급 급여확인 서 등) 각 1부
3.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해당자) 1부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해당자) 1부
5. 건강진단서 1부 (전염성여부)
6. 의사소견서 및 처방전

7. 기타 본인부담금 감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1부

5. 본인부담금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령」 제15조의8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를 받는 자는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

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입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4. 시설의 입소이용료(본인부담금)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별첨 2를 참조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비급여의 상태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내 게시판, 급여 제공 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5.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용료를 산정한 다.(입소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시설급여 기준임))

6. 본인부담금 산정방법

월간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1일당 시설급여 비용에 월간 이용 입수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재된 본인부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 비급여대상 ①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급자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1. 식재료(보비: 1일 3식 비용 및 1일 간식 1회 비용을 합한 금액)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3. 아·미용비
4. 의료비 및 약제비(별도)
5. 개인 간식비
6. 기타 특별보호 시 발생되는 비용
② 수급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외부 프로그램 이용료는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8. 입소이용료 납부방법

- ① 수급자의 입소일 부터 월의 마지막 날까지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이용료를 계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를 보호자에게 문자 또는 카톡으로 고지한다.

- ② 보호자는 고지된 입소이용료를 당월 5일까지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한다. (선납기준). 다만, 5일이 토요일 또는 월요일인 경우에는 다음 첫 월요일, 그 밖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입금한다.

- ③ 입소이용료는 그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기관계좌: 수협은행 / 10101663-8959 / 호담실버케어스 입금 및 카드결제 한다.

9. 입소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①이용료 변경 시 안내절차 -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시설장이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 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여러 가지 방법(직접통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보호자밴드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공제한다.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에게 1부 제공한다.

③ 이용료 납부방법

가. 당월 청구되는 이용료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와 건별 이용료의 정산내용을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고지하며 매월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이용료 납부는 기관의 수납자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물가 변동 등으로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변경될 경우 계약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지 안내한다.

10. 입소이용 계약

- ① 수급자와 시설은 입소이용 계약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계약일로부터 인정시 종료일까지 이며 재경신 인정 시 자동연장)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시설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③ 시설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군·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11. 계약기간

- ① 장기요양 수급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내로 하되,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의사, 병원입원 및 사망, 기타 사유에 따른 서비스 종료 시까지로 그 기간을 정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기간은 변경할 수 있다.
- ② 장기요양 동의자는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의사, 병원입원 및 사망, 기타 사유에 따른 서비스 종료 시까지로 그 기간을 정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기간은 변경할 수 있다.
- ③ 시설은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호자는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 전까지 보호자의 재계약 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 갱신된다. 다만, 시설 정원의 변경이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장기요양 등급변경, 장기요양 급여 및 비급여 비용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를 반영하여 계약을 갱신한다.

12. 계약해지

- ① 수급자가 계약기간의 만료 15일 전까지 시설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계약은 해지된다.
-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기간의 만료일 도래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수급자의 시설 이용 수칙 위반 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중대한 귀책사유 발생 시 시설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입소이용이 어려운 경우 수급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설은 계약을 해지하고 입소자를 퇴소 처리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다른 입소자를 감염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때
2. 입소자의 폭력성으로 인하여 다른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험이 될 우려가 있는 때
3.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다만, 시설의 장이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독촉 고지하고, 독촉 고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3. 입소자의 권리·의무

- ① 입소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되고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입소자는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3. 입소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한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입소자는 직권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입소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6. 입소자는 가족·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7. 입소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입소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2. 입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상이나 사고는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3. 입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훼손은 입소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4. 입소자의 부주의로 인한 소지품 분실, 파손 등은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5. 외출·외박은 보호자 동행 시 허용되며, 이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6. 입소자는 의사의 진료 행위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7. 혐오물품 등 금여제물에 범해가 되는 물품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소지할 수 없다.
8. 시설 내에서 음주·흡연·도박 등 불안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9. 입소자는 다른 입소자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입히는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개인 정결에 유의하여야 한다.
11. 기타 시설이 정한 생활 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알 권리
3. 입소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을 요구할 권리
5. 그 밖에 입소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의 건강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시설에 제공할 의무

2. 입소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 및 변경 시 그 사실을 고지할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할 의무
4. 입소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시설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 내용 변화에 동의해야 할 의무
5. 장기치환 등으로 보호자로서 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정해야 할 의무
6. 입소자의 입소 이용료를 부담하여야 할 의무
7. 그 밖에 입소 이용에 관한 제반 수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

15. 의료기관 이용 및 비용 부담

- ① 시설은 수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상태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긴급히 이송할 수 있다.
1. 저혈당 증세
2. 혈압이 불안정한 경우(고혈압 또는 저혈압 증세가 불규칙적인 경우)
3. 천식 증세의 악화
4. 간질 발작 증세
5. 저해 및 티해 위험이 있는 경우
6. 심한 우울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7. 심장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
8. 기타 시설에서 처치가 불가능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 각 호와 같은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시설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통원치료를 받게 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퇴소 처리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 수급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민간(사설)구급차 비용 및 의료기관 진료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16. 의료기관 진료 의뢰

- ① 감염자 또는 감염 위험자 발생 시 처리절차
- 가. 감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수급자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보호자에게 안내 후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연계한다.
- 나. 간호사는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격리조치 후 감염병의 감염 유무를 관찰한다.
- 다. 감염병이 의심되는 수급자에 대하여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병원 진료를 의뢰 하고 시설장은 병원이송 전까지 해당 수급자를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
- 라. 감염병이 확진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치되고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시설 내 입소를 중지한다.
- 마. 시설장은 감염병의 의심 증상을 보이는 종사자에 대해서 즉각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한다.
- ②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두절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긴급히 진료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의료기관 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의료기관까지 동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 종사자가 동행하고,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인계한다.
- ④ 제항의 경우 종사자는 입소자의 질병 상태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시설의 장에게 보고한다.
- ⑤ 수급자 사망 시 경찰 신고(경찰신고→과학수사대→검안)와 함께 보호자에게 알린다.

17. 응급상황에 따른 조치

- ①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의료기관, 119구급대 또는 민간응급구조센터에 신속히 연락하여 이송 조치한다.
- ② 의료기관 이송 시 부득이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시설 종사자가 의료기관까지 동행하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다.

18. 특별한 보호의 기준과 비용 부담

- ① ‘특별한 보호’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그 구체적 방법은 격리 보호, 낙상 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투박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 예방, 치료를 위한 체위 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보호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입소자 및 시설 종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2. 대치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중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 2년 이상이 침실을 이용하는 상태에서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예상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1인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4. 감염으로 격리가 필요할 경우
5. 그밖에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③ 제1항의 구정에 의한 특별한 보호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 시 신체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한다.
2. 신체적 제한을 할 경우 입소자의 정신 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및 그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19.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서비스의 기준과 비용 부담

- ① 감염병 질환 등 감염으로 인한 격리처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액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 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④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2인용 상급 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2인용 상급 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⑤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별첨> 2025년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 상세내역

노인요양시설 급여 비용 (1일당)						
인력 2.1명당 1명	등급	급여비용	일반(20%)	감경(12%)	감경(8%)	기초 수급자
	1	90,450원	18,090	10,850	7,230	무로
	2	83,910원	16,780	10,060	6,710	무로
	3-5	79,240원	15,840	9,500	6,330	무로
비급여 비용						
항목		금액 (30일 기준)	산출 근거			
식사재료비		342,000원	1식당 3,800원(아침/점심/저녁 제공)			
간식비		30,000원	일당 1,000원(오후 제공)			
상급침실 이용료(1인실 및 특별침실)		300,000원	1일당 10,000원			
상급침실 이용료(2인실)		150,000원	1일당 5,000원			
계약의사 진찰비용		실비	시설급여기관 계약의사 진찰비용 본인부담금에 따름			
방문 가정 간호		실비	가정 간호 병원 책정에 따름			
진료비 및 약제비(입·통원 포함)		실비	병원 및 약국 책정에 따름			
이미용비		무로	단, 전문미용사 이용할 경우 전액 자부담			
기타		실비	개인 전용 간식, 물품 구입 등 전액 자부담			

이용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 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229번길 30-17

- 배방 호담실버케어스